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2. 10 선고 2014가단5228191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서울신용보증재단

피고1. A

2. B

변론 종결2015. 1. 13.

판결 선고2015. 2. 10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29,926,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7. 24.부터 2014. 10. 17.까지는 연 1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가.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. 8. 29. 체결된 증여계약은 32,427,23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나. 피고 B은 원고에게 32,427,2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송백현

별지